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 해 석 의원)

의안 번호	23-134
----------	--------

발의년월일 : 2023. 10. .

발의자 : 남해석, 고병준, 권영숙, 안미자,
장정희, 홍지광, 한선미

1. 개정이유

「예산회계법」 폐지에 따른 조문 내 관계법령 수정 및 조례 전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개정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나.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안 제3조제3호)

- 「예산회계법」의 폐지에 따라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
을 금지하도록 관계법령을 수정

다. 전반적인 조문 정비(안 제1조~제16조)

3. 관계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3. 6. 7. ~ 6. 1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소속 지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를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로,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급이하”를 “5급 이하”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로,

“5급이상”을 “5급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담당관등”을 “담당관 등”으로, “이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협의회에의”를 “따라 협의회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 관련”을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으로, “자료정리·타자등”을 “자료정리·타자 등”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자료정리·타자등”을 “자료정리·타자 등”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등”을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4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업무중 협의회에의”를 “업무 중 협의회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7일이상”을 “7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기

관에 2인이상”을 “해당 기관에 둘 이상”으로, “개최하도록”을 “개최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로,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 및 본조례의 범위내”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것으로본다”를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협의회 규정”을 “협의회규정”으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의결 전”을 “의결 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 규정”을 “협의회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할이상”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을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공무원 중”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회원명부등”을 “회원명부 등”으로, “이의신청”을 “이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을 제출한”을 “신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관련 공무원”을 “관련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은”을 “장이”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 중 “이의 이행에”를 “이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규정등”을 “협의회규정 등”으로, “응하여 야”를 “응하여야”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근무시간중에 이를”을 “근무시간 중에”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 기관”을 “설립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u>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마포구소속 지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u>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u>공무원직장협의회</u>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u>공무원직장협의회</u>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u>4급이상 공무원</u>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u>다음 각호의1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u> <u>공무원직장협의회</u>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u>공무원직장협의회</u>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 ----- ----- ----- -----</p>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u>공무원직장협의회</u>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 ----- <u>4급 이상</u> ----- ----- 한다. 다만,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1.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 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과 및 담당관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1. -----제102조에 따라 -----

2. ----- 5급 이하 -----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 5급 이상 -----

② ----- 둘 이상 -----

③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 담당관 등 -----
----- 제외한다. -----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조례·규칙·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제3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
----- 따라 협의회에 -----

----- 각 호-----.

1. -----

----- 공무원에게 -----

----- 사람을 -----
2.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 -----
----- 자료정리·타자 등 -----
----- 사람을 -----

3. -----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생략)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7. (생략)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③ (생략)

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 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

법률」-----자료정리

· 타자 등 -----
-- 사람을 ----

4. (현행과 같음)

5. -----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

6.·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해당 -----

-- 업무 중 협의회에 -----

제4조(협회의 설립) ① -----

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인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 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가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 7일 이상 -----
-----.

② ----- 해당 기관에 둘 이상 -----

----- 개최되도록 -----.

③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
-----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 -----

-----.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제6조(협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 및 본조례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

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규정) -----

----- 각 호-----

-----.

1. ~ 10. (현행과 같음)

제6조(협회의 가입 및 탈퇴) ① -----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
-----.

② -----

별지 제4호 서식-----
-----.

③ ----- 이유 없이-----

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 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⑥ (생략)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 -----

--- 것으로 본다.

④ -----

----- 해당 -----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
----- 협의회규정 -----

----- 3일 전 -----

--- 의결 전 -----

제8조(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
-- 해당 -----

②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
건을 정하여 협회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
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
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
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
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
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
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
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⑤ (생략)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
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
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

② -----

----- 협회의 규정 -----
-----.

③ -----

-----.

1. ----- 100분의
10 이상-----

2. ----- 100분의 10 이상
인 경우에는 1명 이상-----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 소속
공무원 중 -----
----- 제4조-----

----- 회원명부 등-----

----- 이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

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② (생략)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

③ -----

----- 신청 -----
-----.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7일 전 -----

-----.

④ -----
-----.

----- 관련 공무원 -----
-----.

⑤ -----
----- 공개한다. 다
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문서에 의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회의 의무) ① (생략)

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

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

-----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
-----.

⑦ ----- 장이 -----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

----- 이행하기 위하여 -----.

제12조(협의회회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3일 이내-----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 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 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

----- 협의회규정

--- 응하여야 ----.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

-----.

---- 근무시간 중에 -----
-----.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

설립기관-----
-----.

【관 계 법 령】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직협법)

[시행 2022. 10. 27.] [법률 제18844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7조(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등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등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그 밖에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4. 26.> [전문개정 2010. 3. 12.][제목개정 2022. 4. 2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
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박혜리
연 락 처	02-3153-8205